細　　則

2005.　2.

社團法人 韓國꽃藝術作家協會

제 1 장 회 원

제 1 조 중앙회는 각 독립단체의 집합체이며, 회원은 회장1명 및 그 사범10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2 조 회원은 꽃꽂이 작가활동을 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중앙회 소속회 회원의 작업기간은 다음 각항에 준한다.

① 〈주1회 기준〉

3年								2年	1年	2年	(4年/합12年)	합15年)
入門	6個月	初級	6個月	中級	1年	高級	1年 (2年)	師3給 (3年)	師2給 (5年)	師1給 (6年)	支部長 (8年)	단독회장 및지회장	독립회장 자격(합법적으로 협회에서 인정) (15년) 통과

② 사범 3급까지 3년(6개월마다 응시)
사범 2급까지 5년(6개월 단축 가능)
사범 1급까지 6년(5년에서 6년사이 6개월 단축 가능)
사범 1급까지 지부장까지 (8년) (단독회장 12년 포함)(요 월 1회 연구반 참가)
(ㄱ) 이 중 사범 3급까지의 응시를 1개월 인정함
(우수자는 1개월을 추가 인정함)
(ㄴ) 사범 3급에서 1급까지 응시를 2개월 인정함(우수자는 1개월 추가 인정함)
(ㄷ) 즉 7년동안 1년 3개월 단축 가능함
(또는 우수자는 1년 5개월 단축 가능함)
(ㄹ) 6년에서 7년까지는 단축할 수 없으며 중앙회 연구과정이 된다.

③ 회원은 각 소속회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이행할 수 있다.
사범 3급은 … … … 고급까지
사범 2급은 … … … 사범 3급까지(3년까지)
사범 1급은 … … … 사범 3급까지(4년까지)
지부장은 … … … 사범 2급까지(5년까지)
단독회장 … … … 사범 2년까지(2급 취득후 1년까지)를 지도할 수 있다.
회원의 단기양성은 사범 3급과정에서 1급과정까지 인정하며, 각 6개월만을 단축할 수 있다.(6년에서 7년 사이의 과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지방거주자, 해외 나갈 자,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한다.

제 4 조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회원급수 승급시에는 소속회에서의 승급된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3급은 2급증을(또는 응시확인증 … … 4년, 6년)

2급은 1급증을(또는 응시확인증 … … 4년, 6년)
단, 불이행시 승급이 보유된다.

제 5 조 ① 신입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인정한 소속회에서 3년 이상 수료하여 중앙회 3급사범 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이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② 3급사범 취득 후에는 반드시 본회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외국에서 전시회·기타 국위선양을 위한 행사의 참가자격자는 소속회 1급사범 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 7 조 회원은 신문·잡지·기타에 작품을 출품하였을 시 원고료와 재료비를 청구,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

제 8 조 회원은 협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협회 회원에게 유인물을 발송할 시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회원자격

① 신입회원으로 입회하고자하는 자는 본회에서 인정한 소속회에서 3년 이상 수료하여 중앙회 3급사범시험에 응시하여 이에 합격한 3급사범으로 회장 추천을 받아 협회에 가입한다.
② 정회원은 준회원 1년을 거친 회원으로 선거일, 총회 1개월 전까지 연회비를 완납해야 된다.
③ 당해연도 완납자에 한해서 제증명 발급을 하며 2년이상 회비 미납시 제명 한다.

2) 회원 수업

3급사범 과정 후에는 반드시 본회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3) 독립회장 및 단독회장

① 독립회란 본 협회 산하단체로서 독립된 조직을 갖고 있는 중앙회를 말한다.
② 단독회는 본 협회 산하단체 내에서 독립회장과 동격인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하며 독립하기 전까지는 회원이며 모든 권한은 독립회 중앙회에 있다.(입회후 5년이상 지난자로 단독회12년 수업기준이며 역산입회를 적용 할 수 있다.)
③ 유사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자
④ 승계된 회장은 계승받은 날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⑤ 독립회장은 의무로 회원10명이상을 협회에 가입시키고 10명 미만일 경우 동등한 의무를 이행한다.

제 2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해임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①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직무상의 업무를 위배하거나 임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때
③ 년 총이사회, 회의의 3분의1 이상을 불참한 이사는 차기 년도 이사회에서의 가결권을 상실한

다.

제 10 조 ① 감사는 전임 임원을 역임한 자로 현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상임위원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상임위원에서 선출한다.

상임위원 배정에 있어서는

1. 비례 대표로 하되 각 소속회 회장1명과 회원 10명(회장1:회원10)으로 한다.
2. 비례 대표 자격은 협회가입 회원으로서 선거시행 당해 년도 10월말까지 회비 완납자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행 1개월 전에 구성한다.
4. 입후보자는 선거 시행일 2개월 전까지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임원의 선출은 득표순으로 한다.
6. 입후보자 등록 구비 서류
   (1) 선거 공약
   (2) 이력서2통
   (3) 가족관계증명 2통,주민등록 등본2통,주민등록 초본2통,인감증명서2통
   (4) 투표결과에 승복하는 서약서 1통

임원자격

1) 이사장 후보자격

① 각 회의(이사회, 합동회의, 총회)에 각 3분의 2 이상 출석한 회장

② 협회 가입회원이 20인 이상인 자

③ 협회 독립회장 한지 15년 이상인 자

④ 부이사장 역임한 자

2) 부이사장 후보자격

① 각회의(이사회, 합동회의, 총회) 각 3분의 2 이상 출석한 회원

② 이사를 역임한 자

③ 독립회장 한지 10년 이상인 자

④ 부이사장은 득표순위로 하고 동표일 경우 연장자 순위로 한다.

⑤ 회원이 15인 이상인 자

3) 입후보 자격(이사)

① 각 회의(합동회의, 총회) 각 3분의 2 이상 출석한 회원

② 독립회장 한지 7년이상 연한 심사

③ 협회 가입회원 10인 이상인 회원

④ 단독회장이 임원에 출마할 경우 선거 2년 전에 독립회의 의무를 다 해야 하며 협회에서 인정하는 독립회장과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 함(단, 소속회에서 1명만 출마한다)

⑤ 단,필요한 사항은 당대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 11 조 사무국장은 모든 업무진행사항을 수시로 제1부이사장에게 일단 보고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 12 조 이사장은 협회인·이사장인, 제1부이사장은 통장을 보관하여 사무처리의 공정을 기한다.

제 3 장 독립회 · 단독회

제 13 조 ① 독립회란 본회 산하 단체로서 독립된 조직을 갖고 있는 회를 말한다.
② 단독회는 본회 산하 단체 내에서 인정하는 독립회장과 동격인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독립회는 의무적으로 10명이상을 입회 시켜야 하며 그렇치 못할시에는 10명의 의무를 한다

제 14 조 독립회 및 단독회의 회장 자격심사는 다음 각항에 준한다.
① 교수경력이 12년 이상인 자(개인회 입문 15년)
② 소속회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소속회 회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모든 상황과 그 인품이 독립회장 및 단독회장으로 적합치 않을 시, 이사회에서 심사·거부한다.
③ 본회 및 소속회의 시책에 협조한 자

제 15 조 외국에서 정규코스(사범취득을 유학으로 간주)를 수학한 자의 독립회의 회장 자격심사는 다음 각항에 준한다.
① 본회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② 국내활동 5년 이상 가진 자

제 16 조 본회 소속회가 아닌 기타 회가 독립회 단독회의 자격으로 입회를 원할 경우, 기타회 대표는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
단, 외국 국적 소유자는 외국지부 대표로는 가능하다.

제 17 조 본회에 소속되는 독립회 및 단독회는 인가를 받은 본회의 인준기준에 따라 승인한다.

제 4 장 지회 또는 지부(연구회, 연구소, 교실 포함)

제 18 조 본회는 국내 및 국외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두며 연구소, 교실을 둘 수 있다.

제 19 조 지회 또는 지부는 국내 또는 국외에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동지역에서 두 개 이상 둘 수 있다.

제 20 조 지회 또는 지부, 연구소, 연구실은 본회 산하 단체인 소속회 명칭과 합동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 21 조 지회 및 지부 또는 연구소, 교실은 각각 강사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22 조 지회 및 지부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 23 조 지회 및 지부의 임무는 다음 각 항에 한한다.
① 지회 또는 지부는 본부의 시책을 접수하여 그 지방 및 해외거주의 연구회, 연구소, 교실 및 회원에게 신속하게 전달 확인한다.
② 지회 또는 지부의 그 지방 및 해외 거주 회원의 활동 상황과 기타 본회에 관계되는 정보를 수집, 수시로 본부에 알린다.

③ 지회 및 지부는 그 지방 및 해외거주 회원의 활동상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본부와 협조하여 해결에 힘쓴다.

제 24 조 지회장 또는 지부장은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25 조 지회장 또는 지부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6 조 지회장 또는 지부장은 운영상 필요한 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 27 조 지회 또는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회장 또는 지부장이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 28 조 지회 또는 지부는 제27조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시 이사회의 가결을 얻어 해산한다.

제 29 조 지회장 또는 지부장이 그 직을 사퇴하고자 할 시, 이사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한다.

제 30 조 ① 지회장 또는 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 부지부장을 징계할 수 있다.

1.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②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직위해임
3. 강등처리
4. 자책

제 5 장 전체합동회의

제 31 조 전체합동회의는 임원, 각 소속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32 조 전체합동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②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3 조 전체합동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34 조 회의에서 표결로서 찬·반을 가렸을 때는 협조해야 한다.

단, 의결기구는 아니다.

제 6 장 전 시 회

제 35 조 전시회는 격년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6 조 본회소속회의 전시회는 개최일로부터 최소 1개월전, 특강 단체 강의 등은 시행일로부터 최소 1주일전에 본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7 조 세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인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세칙은 이사회에서 가결하여 총회에서 공포한다.
단, 본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사용한다.

위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꽃예술작가협회 세칙을 작성함.

2005. 2